

[별표 9] 제2조(적용범위) 제3항 적용가능 건축물 기준

구분	적용가능 건축물
공동주택 (아파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동주택(아파트) 중 20세대 미만,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의 관사 아파트 -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물 <p>※ 인증서의 인증내용 구분은 「아파트」로 교부됨</p>
공동주택 (연립주택· 다세대주택· 기숙사·도시 형생활주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동주택(연립주택·다세대주택·기숙사·도시형생활주택) 중 20세대 미만, 교육연구시설의 기숙사,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의 관사 <p>※ 인증서의 인증내용 구분은 「연립주택·다세대주택·기숙사·도시형생활주택」으로 교부됨</p>
업무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무시설 중 3,300㎡ 미만, 근린생활시설 등의 업무시설 - 업무시설이 포함된 교육연구시설, 의료시설,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복합건물 <p>※ 인증서의 인증내용 구분은 「업무시설」로 교부됨</p>
오피스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피스텔 중 3,300㎡ 미만, 오피스텔이 포함된 복합건물 <p>※ 인증서의 인증내용 구분은 「오피스텔」로 교부됨</p>
홈네트워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동주택(아파트) 중 20세대 미만,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의 관사 아파트 -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물 <p>※ 인증서의 인증내용 구분은 「아파트」로 교부됨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동주택(연립주택·다세대주택·기숙사·도시형생활주택) 중 20세대 미만, 교육연구시설의 기숙사,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의 관사 <p>※ 인증서의 인증내용 구분은 「연립주택·다세대주택·기숙사·도시형생활주택」으로 교부됨</p>

- ※ 추가/변경/삭제 사항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홈페이지(www.bica.or.kr)에서 확인 가능함
- ※ 적용가능 건축물 기준은 관리/인증기관의 검토 및 승인에 따라 추가/변경/삭제 될 수 있음
- ※ 복합건물의 경우 심사가 가능한 공동주택, 업무시설, 오피스텔에 한해 심사함
- ※ 건축허가서, 감리결과(사용전검사), 설계도면 등으로 해당 건축물 세부용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